

제2조 이용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가.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나.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다.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3.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이용한 도	공단부담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 담	본인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0%임)

-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1)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인원인수인은 계약 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

우

④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6. 시설관리

1) 시설관리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수혜자는 시설의 대여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혜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해야 한다.

②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

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 하며, 시설은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의료 및 건강관리

- ① 수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대여 서비스 제공도중 수혜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③ 사업소에서는 수혜자의 건강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3) 위급시 조치

- ① 사업소는 수혜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 졌거나 거동

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혜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혜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혜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혜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사업소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수혜자가 임의로 대여물품 등을 조작하다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수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수혜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7의 전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

보험과 전문인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1. 제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월 이용료

1) 급여대상자

- 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
- 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 불가.

2) 급여방식

- 가.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나.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3)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감경	타법령에	「국민기초생활보
----	----	------	----------

4) 급여비용 연한도액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 수급 자 는 복지용 구 급	15%	6%	9%	6%

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임.

나.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5) 복지용구 이용 갯수

가. 사용 가능 갯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갯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갯수 내에서 구입 가능.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갯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갯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라.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
이용 불가.

가. 사용 가능 갯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개수」를 초과하여 구입 불가.

사. 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개수

아.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 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매트	양말				
	5개	6켢레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품 목					사용가능 햇수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2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년
	3		성인용 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하는 용품	5년
	4		안전 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5		미끄럼 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액)	없음
	6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7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년
	8		욕창예방 방석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9		자세변환 용구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10		요실금 팬티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	없음
대여 품목	11		수동 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5년
	12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0년
	13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0년
	14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5년
	15		목욕 리프트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3년
	16		배회 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 (GPS형, 매트형)	5년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7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18		경사로 (실내용) 경사로 (실외용)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용품	2년 (실내용) 8년 (실외용)

자. 복지용구 이용품목표

가. 2.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1. 서비스의 내용(급여종류)

1)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3)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으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됨

4)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5)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액 ·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1. 비용의 부담

1) 복지용구 제공에 대한 비용의 지불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사전에 문서로 설명을 실시해, 지불에 동의하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기명 날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품목에 따라 이용료는 목록에 기재해 둔다.

3.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

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급여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사업소 보관)

-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함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